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6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실무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정함(안 제3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4조).
-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
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soluck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이 해외현지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방법
3.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해외현지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글로벌 현장학습(인턴십) 운영
- 관련 조문 : 해당없음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교육부 공모 선정에 응모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으로 선정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시청)에서 동사업 관련 예산 확보

나. 추계 결과 : 3,490,000천원 / 5년간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특별교부금 / 시 전입금 / 자체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가. 교육부에서 지속적 사업추진 필요(일몰사업 대상임)
- 나.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 필요

5. 작성자 : 과학직업정보과 성명 손인성 (☎480-7690)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69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490,000	
자체수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특교	190,000	200,000 (공모평가 후 확정)	200,000 (공모평가 후 확정)	200,000 (공모평가 후 확정)	200,000 (공모평가 후 확정)	990,000	
전입금(시청)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 출	69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490,000	
국내교육비	5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90,000	
현장학습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운영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재원 조달	69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490,000	
의존 재원	소 계	39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90,000
	특교	19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90,000
	전입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자체수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